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31
----------	------

2024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 5.27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4. 5.30

4. 상정일자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4. 6.2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4. 6.24)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 의안번호 제192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9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변경안 등 7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을 회수하는 등 재무활동 조정으로 인한 2024년도 수입·지출계획의 변경으로, 총 853억 원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증액되었음
-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6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에, 행정운영경비에서 16백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 37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931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가. 제안이유

- 1).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금 조정 및 신규사업 편성 등으로 2024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기후대응기금은 1차 운용계획 변경 심의로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 등 정책사업비 51,007백만원에서 52,709백만원으로 1,702백만원 증액, 예치금 20,447백만원에서 18,745백만원으로 1,702백만원 감액한 바 있음(20% 미만 변경)
- 2). 2023회계연도 결산으로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 금액이 40,416백만원에서 47,643백만원으로 7,227백만원 증가하였고, 이에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이 18,745백만원에서 25,972백만원으로 7,227백만원 증액됨(20% 초과 변경)

다. 지출계획 정책사업비를 52,709백만원, 예치금을 25,972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라. 수입계획 변경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 감 (C=B-A)
계 (순 수입)	71,464 (19,048)	78,691 (19,048)	7,227 -
예 치 금 회 수	40,416	47,643	7,227
예 탁 금 원 금 회 수	12,000	12,000	-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12,374	12,374	-
이 자 수 입	2,055	2,055	-
기 타 수 입	3,169	3,169	-
전 입 금	1,450	1,450	-

마.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A)	1차 변경	2차 변경(B)	증 감(B-A) (증감률)
합 계	71,464	71,464	78,691	7,227 (10.1%)
(순 지출)	(51,017)	(52,719)	(52,719)	1,702 (3.3%)
일 반 예 산 (재 무 활 동)	20,447	18,745	25,972	5,525(27.0%)
보 전 지 출	20,447	18,745	25,972	5,525(27.0%)
여 유 자 금 예 치	20,447	18,745	25,972	5,525(27.0%)
기 후 변 화 대 응 강 화	51,007	52,709	52,709	1,702 (3.3%)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51,007	52,709	52,709	1,702 (3.3%)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1,000	1,000	1,000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	1,200	1,200	1,200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30,734	30,734	30,734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1,570	1,570	1,570	-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1,006	1,006	1,006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500	500	500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6	6	6	-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250	250	250	-
주민DR 서비스 확대사업	242	242	242	-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사업	11,014	11,014	11,014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25	1,025	1,025	-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 지원	2.7	2.7	2.7	-
지열 운영비 시범 지원사업	500	500	500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1,957	2,047	2,047	90 (4.6%)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290	290	290 (100%)
저탄소건물 인증제도 시행		100	100	100 (100%)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150	150	150 (100%)
봉제원단폐기물 집하장 설치 운영		90	90	90 (100%)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252	252	252 (100%)
커피박 수거·재활용 활성화		500	500	500 (100%)
음식물쓰레기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230	230	230 (100%)
행 정 운 영 경 비	10	10	10	-
기 본 경 비	10	10	10	-
기 금 관 리 비	10	10	10	-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21회 정례회)대비 여유자금 예치금 20% 초과(27%)

3. 검토의견

-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증가(72억 2,700만원)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중 55억 2,5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다른 정책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17억 2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은 당초 지출계획(204억 4,700만원)보다 27.0%, 55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259억 7,200만원)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그러나 다른 ②정책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경우,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를 포함한 7개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사업은 9,000만원을 증액하고자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초 정책사업 지출계획(510억 700만원)보다 3.3%, 17억 200만원 증액하여 변경(527억 900만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해당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표 3-1〉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A)	1 차	2 차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출 합 계	71,464	71,464	78,691	7,227	10.1
일 반 예 산 (재 무 활 동)	20,447	18,745	25,972	5,525	27.0
보 전 지 출	20,447	18,745	25,972	5,525	27.0
여 유 자 금 예 치	20,447	18,745	25,972	5,525	27.0
기 후 변 화 대 응 강 화	51,007	52,709	52,709	1,702	3.3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51,007	52,709	52,709	1,702	3.3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실증지원 사업	1,000	1,000	1,000	-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	1,200	1,200	1,200	-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30,734	30,734	30,734	-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1,570	1,570	1,570	-	-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1,006	1,006	1,006	-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500	500	500	-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6	6	6	-	-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250	250	250	-	-
주민 DR 서비스 확대 사업	242	242	242	-	-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사업	11,014	11,014	11,014	-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25	1,025	1,025	-	-
제로웨이스트 다화용기 사업자 육성 지원	2.7	2.7	2.7	-	-
지열 운영비 시범 지원사업	500	500	500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1,957	2,047	2,047	90	4.6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	290	290	290	-
저탄소건물 인증제도 시행	-	100	100	100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	150	150	150	-
봉제원단폐기물 집하장 설치 운영	-	90	90	90	-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	252	252	252	-
커피박 수거·재활용 활성화	-	500	500	500	-
음식물쓰레기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	230	230	230	-
행 정 운 영 경 비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10	10	10	-	
기 본 경 비 (기 후 대 응 기 금)	10	10	10	-	
기 금 관 리 비	10	10	10	-	

※ 자료근거 :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

②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4. 5.27) 재구성

○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일부 금액을 신규사업 등에 편성하고자 기존에 운용중인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요청한 것인 바,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제출된 의안의 주요내용은 지출계획변경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산액이 'A에서 B로 증가'한다는 식의 나열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에는 의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심사·의결 받고자 제출하는 자료임을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5.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용자·지원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
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자(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용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가. 소위원회

○ 위원구성 :

- 위 원 장 : 이병도(도시계획균형)
- 부위원장 : 신복자(기획경제), 박승진(주택공간)
- 소위원회 : 구미경(행정자치), 박수빈(행정자치)
김재진(환경수자원), 김규남(문화체육관광)
유만희(보건복지), 김 경(보건복지)
이상욱(도시안전건설), 신동원(주택공간)
박영한(도시계획균형), 이경숙(교통)
정지웅(교육), 전병주(교육)

※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

나.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6.21(금) 15:00 ~ 18: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6.22(토) 14:30 ~ 18: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6.23(일) 15:00 ~ 2024. 6.24(월) 03: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VI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4. 6.24)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931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금 조정 및 신규사업 편성 등으로 2024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후대응기금은 1차 운용계획 변경 심의로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 등 정책사업비 51,007백만원에서 52,709백만원으로 1,702백만원 증액, 예치금 20,447백만원에서 18,745백만원으로 1,702백만원 감액한 바 있음(20% 미만 변경)
- 나. 2023회계연도 결산으로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 금액이 40,416백만원에서 47,643백만원으로 7,227백만원 증가하였고, 이에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이 18,745백만원에서 25,972백만원으로 7,227백만원 증액됨(20% 초과 변경)
- 다. 지출계획 정책사업비를 52,709백만원, 예치금을 25,972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라. 수입계획 변경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 감 (C=B-A)
계 (순 수입)	71,464 (19,048)	78,691 (19,048)	7,227 -
예치금회수	40,416	47,643	7,227
예탁금원금회수	12,000	12,000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2,374	12,374	-
이자수입	2,055	2,055	-
기타수입	3,169	3,169	-
전입금	1,450	1,450	-

마.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A)	1차 변경	2차 변경(B)	증 감(B-A) (증감률)
합 계 (순 지출)	71,464 (51,017)	71,464 (52,719)	78,691 (52,719)	7,227 (10.1%) 1,702 (3.3%)
일반예산(재무활동)	20,447	18,745	25,972	5,525(27.0%)
보전지출	20,447	18,745	25,972	5,525(27.0%)
여유자금예치	20,447	18,745	25,972	5,525(27.0%)
기후변화 대응 강화	51,007	52,709	52,709	1,702 (3.3%)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51,007	52,709	52,709	1,702 (3.3%)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1,000	1,000	1,000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	1,200	1,200	1,200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30,734	30,734	30,734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1,570	1,570	1,570	-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1,006	1,006	1,006	-
서울형 햇빛 발전 지원	500	500	500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6	6	6	-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250	250	250	-
주민 DR 서비스 확대 사업	242	242	242	-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사업	11,014	11,014	11,014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25	1,025	1,025	-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 지원	2.7	2.7	2.7	-
지열 운영비 시범 지원사업	500	500	500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1,957	2,047	2,047	90 (4.6%)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290	290	290 (100%)
저탄소건물 인증제도 시행		100	100	100 (100%)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150	150	150 (100%)
봉제원단폐기물 집하장 설치 운영		90	90	90 (100%)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252	252	252 (100%)
커피박 수거·재활용 활성화		500	500	500 (100%)
음식물쓰레기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230	230	230 (100%)
행 정 운 영 경 비	10	10	10	-
기 본 경 비	10	10	10	-
기 금 관 리 비	10	10	10	-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21회 정례회)대비 여유자금 예치금 20% 초과(2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팀 강동훈(☎ 2133-3517)